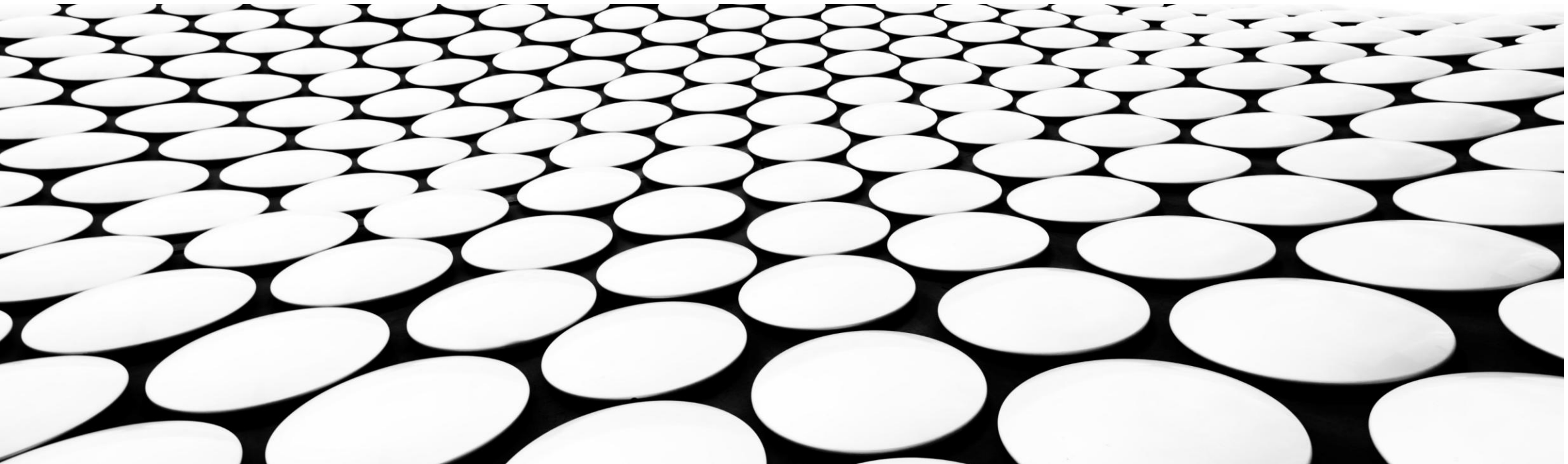

기후적응을 위한 정원도시 법제화 전략

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황 승 흠



CONTENTS

- 기후위기적응목표의 제시 : 탄소중립기본법
- 왜 정원도시 법제화가 필요한가?
- 2015년 수목원/정원법의 출발과 한계
- 지속가능한 면 중심의 정원육성 전략으로서 정원도시 법제화
- 수목원 · 정원법 개정 : 정원도시 규정 방안
- 정원도시의 지정 방안 : 예비도시-본도시 방안
- 정원도시를 위한 법적 기반 : 정원 조성 구역의 확대
- 정원도시를 위한 법적 기반 : 지방정원 지정제의 도입
- 정원도시를 위한 법적 기반 : 민간정원 제도의 정비 방안

기후위기적응목표의 제시 : 탄소중립기본법

- 기후변화 대응의 전략 : 감축과 적응
- 탄소중립기본법 :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무(제8조)
- 탄소중립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(제10조)
- 기후위기 적응은 감시/예측 중심으로 규정하나 적용 목표 설정을 제시하지 않는다. (제37조)
-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 마다 수립시행(제38조) → 왜 대책인가? 행정계획이 아닌가?
-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하위 개념에 불과
- 기후위기 적응 목표(녹색지수/도시온도 등)을 설정하고 기후위기 적응 기본계획으로 규정할 필요
- 기후위기 적응에 대표 전략으로 정원도시 구현 → 탄소중립도시 보다 구체적이고 시민 친화적 접근

왜 정원도시 법제화가 필요한가?

- 정원도시는 도시의 정책으로 법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법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지만 법은 세상을 빨리 변하게 할 수는 있다.
- 정원조성은 자치사무 → 정원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지원의 법제화 필요
Ex) 지역문화진흥법의 문화도시, 평생학습법의 평생학습도시, 스마트도시조성법의 스마트도시
- 정원도시 법제화는 도시의 정원화-녹색화를 촉진시켜 기후적응 도시를 만드는 핵심 전략

2015년 수목원 · 정원법의 출발과 한계

- 2015년 수목원법에서 수목원·정원법으로 전환 : 정원법의 출발
- 정원의 육성 틀 : spot 중심 전략 → 국가정원/지방정원/민간정원
 - 수목원 육성체계에서 정원 육성의 틀을 가져옴 : 국립수목원/공립수목원/사립수목원
- 국가조성 국가정원 : 사례 없음
- 국가정원 지정제 :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육성 → 2개의 국가정원 지정
- 지방자치단체 조성 지방정원
- 민간조성 민간조성
- 질문 : **하나하나의 정원이라는 spot 중심 전략은 지속가능하고 정원의 확산을 위한 충분한 조건인가?**

지속가능한 면 중심의 정원육성 전략으로서 정원도시 법제화

- 질문
 - 민간정원은 국가정원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가?
 - 지방정원에는 지정 지방공원이 왜 없는가?
 - 국가정원이 아니라면 더 이상 정원 육성이 되지 않는가?
- 정원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원의 전체 분포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 필요
- 정원 중심의 도시 육성 전략으로서 정원도시 법제화 필요
- 지방정원 + 민간정원이 도시에 어울려 있는 것 → 도시민의 향유와 정원문화 진흥
- 국가의 정원도시 지원 법제화를 통해서 정원도시 확산

수목원 · 정원법 개정 : 정원도시 규정 방안

정원도시 정의

- 지역 특성화를 통한 도시의 생태경쟁력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제0조제0항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및 공동체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향유하는 생활환경을 구현한 도시로서 제0조제0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시

정원도시 조성 및 관리의 기본원칙

- 1. 정원의 향유를 통한 주민의 지속가능한 건강한 삶의 유지와 도시의 자연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
- 2. 지역 특화의 정원 문화 진흥을 통해 도시의 생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
- 3. 주민이 참여하는 정원의 지속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원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
- 4. 탄소중립·녹색성장을 기반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할 것

정원도시의 지정 방안 : 예비도시-본도시 방안

- 산림청장은 도시의 생태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·군·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정원의 조성·지속적 관리·향유사업을 수행하는 정원도시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
- 정원도시 지정을 하기 전에 시·군·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원도시 조성 예비사업을 하는 예비정원도시 지정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
- 지정기간 제한 필요 : 지속가능성 확보
- 정원도시 평가제도 : 정원의 조성·관리·향유 등에 대한 평가 → 지원 지속 조건 + 지정취소

정원도시를 위한 법적 기반 : 정원 조성 구역의 확대

- 정원 정의의 확장 issue : 정원 범위에서는 문화유산, 자연유산, 자연공원, 도시공원과 대지조경공간 제외
-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함께 제외 → 정원 조성의 제약 요소
- 공원과 정원의 목적이 유사한데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정원을 조성할 수 없는가?
- 왜 정원은 공원이 아닌 녹지에만 조성되어야 하나?
-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/도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 제공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목적 → 정원의 목적과 같다.
- 정원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한한 도시의 넓은 구역에서 정원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.
- 아파트의 대형화 추세 : 대지조경공간은 개인공간을 넘어서서 민간정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?

정원도시를 위한 법적 기반 : 지방정원 지정제의 도입

- 지방정원 제도의 한계 : 지방정원에는 지정제도가 없다는 문제
- 정원법은 수목원법과 병렬 규정을 통해 출발 : 수목원·정원법의 일부로서 정원법
- 국가정원은 국가정원조성과 국가정원지정(지방정원 대상)으로 규정
- 공립수목원은 지자체 조성수목원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으로 규정
- 지방정원은 지자체조성 정원만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지방정원은 규정되지 않음
- 지자체 지방정원 진흥 조례로서는 지자체 조성 정원만 규정 가능.
- 광역단체가 기초단체가 조성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광역단체 정원 지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을까?
- 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의 근거 없다는 문제 → 공립수목원과 동일한 병렬 조항 필요

정원도시를 위한 법적 기반 : 민간정원 제도의 정비 방안

- **민간정원 제도의 문제점** : 수목원·정원법에서는 사립수목원과 민간정원을 같은 지위로 본다.
- 사립수목원은 공적 목적 수행 :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→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/토지수용
- 민간정원에도 이를 준용 : 정원의 목적으로 볼 때 타당한가? 민간정원과 사립수목원은 성격이 다르다. → 민간정원에 독립적인 법체계 마련 필요.
- 민간정원은 등록해야만 정원이 된다. : 정원 등록은 의무가 아니다. 미등록 정원은 정원이 아닌가?
- 사립박물관의 식물원과 민간정원은 사실상 중첩되는 제도 : 정원 조성자의 선택 → 등록박물관 조세 특례/전기요금 특례 : 민간정원과 사립식물원의 통합관리 체계 필요
- 지방정원을 넘어 민간정원 조성을 위한 공공토지 임차 제도 검토 → 공공토지 임차 민간정원



감사합니다.